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872-01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사항 안내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사항 안내서 **발간사**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로 뿔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 개최되는 K-Pop 콘서트에 수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넷플릭스 등 미디어 콘텐츠 제공 플랫폼에서 우리 드라마가 수익을 넘어서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류 스타들의 인지도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였습니다. 우리 스타들이 유명 패션 잡지, 화장품, 의류 업체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등 주요국 유명 도시의 거리에서, 우리 스타들의 얼굴과 이름을 마주하는 것이 이제는 전혀 생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의 창의성과 더불어 우리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와 노력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 서명 등이 지니는 재산적 가치(소위 ‘퍼블리시티권’)를 인정하고, 법률 또는 판례를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간 명문의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보호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유명인의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작년에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안내서는 새로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법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였고,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아무썩, 본 안내서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명인의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가 조성되어,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더욱 높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특 허 청 장 이 인 신



목차

Contents

Part I. 목적 및 활용	06
Part II.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 자가진단	10
Part III.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 Q&A	11
Part VI.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 사례	17
Part V.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23

Part I.



목적 및 활용

1 책자의 목적

- 2022년 6월 8일,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소위 ‘퍼블리시티권’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시행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
-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 확충
 - 새로운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 질서를 정립하여 유명인 등의 재산적 손실이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책자를 발간·배포



2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 입법배경

-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하고 유명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 발생
- 그간 우리나라는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과 민법(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751조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에 근거하여 초상·성명 등의 인격적 가치를 폭넓게 보호(위자료)하여 왔으나,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
 - 유명인과 일반인의 인격의 가치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여도 그에 대한 배상액(위자료)의 규모는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
 - 하급심은 초상·성명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명문상 규정이 없으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 다수
-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투자와 노력의 성과로 인정하고, 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 마련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보호 사례

- BTS의 이름·사진 등을 무단 사용하여 화보집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타인의 투자 및 노력의 성과를 무단사용한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2019마6525)



③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 입법내용

-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를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추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타목 신설)

【보호대상】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로 규정하여 인적 식별표지이면 제한 없이 적용

【구제수단】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제4조, 제5조) 및 행정조사·시정권고(제7조, 제8조) 가능

신설 조문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④ 책자의 활용 방법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Q&A, 사례를 제공하여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절차와 신고방법 등을 제공하여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5 예상 구독자

- 본 책자의 예상 구독자는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에 관한 당사자,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 또는 제공에 관련된 모든 기업, 일반인 등 폭넓게 상정

6 책자 활용 시 주의사항

- 본 책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신설된 초상 등에 대한 보호 규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다목과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초상, 성명의 보호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음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다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을 표지로서 사용하여 상품 또는 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희석화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소송 및 행정조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 또한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책자는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과 민법(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751조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에 의한 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은 다루고 있지 않음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 관련 판례가 현행 관련 조문(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타목)이 신설되기 전,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규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파목)을 근거로 판결되었음에 주의

Part II. >>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 자가진단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점검방법

다음의 성립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의 무단사용행위에 해당

성 립 요 건	YES	NO
<p>○ 국내에 널리 인식될 것</p> <p>얼굴, 성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로서, 국내 전역에 연령대와 상관없이 널리 알려진 경우뿐 아니라, 일정 지역이나 특정 세대에만 국한되어 알려진 경우도 해당</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p> <p>해당 업계에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일 것</p> <p>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과 관련된 것임을 연상하게 하는 이름, 얼굴, 목소리, 예명 등</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일 것</p> <p>유명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으면서 유명인의 초상 등을 제품에 부착하는 행위와 같이,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자가 유명인의 초상 등을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하도록 사용하는 행위 등</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할 것</p> <p>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행위</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것</p> <p>유명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성과 등과 관련된 영업상의 이익 뿐 아니라, 명성, 신용, 영업 가치, 기술상·영업상 정보와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art III. —————>>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 Q&A



Q.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는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에 해당하는지?

A.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판례에 의하면, “유명성(국내에 널리 인식되고)”은 해당 업계의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 또는 세대에만 국한되어 알려진 경우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입증 방법은 언론에 노출된 횟수, 팬클럽 규모, 관련 상품 매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적 사안별로 다를 수 있음

【예시①】 특정한 세대가 집중적으로 알고 있고 특정한 세대는 모르는 경우

【예시②】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의 신문이나 잡지 등에 소개되어 널리 알려진 경우

【예시③】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Q.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은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에 해당하는지?

A. 해당 업계에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함.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개성은 ‘고객 흡입력’이 있어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한 바 있음(서울서부지방법원 4.27 선고 2016가합33974 판결)

【예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상품에 사용하여 경쟁사 상품에 비해 판매량이 증가하는 경우

Q.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에 해당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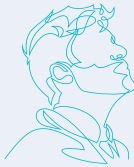
A.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 유명인이 연상되는 정도의 표지를 의미하며, 캐리커처, 초상화, 목소리 등으로 유명인이 특정된다면 보호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

【예시①】 제품 등에 사용되는 유명인의 ‘얼굴’ 또는 ‘캐리커처’

【예시②】 운동 용품에 사용되는 유명한 운동 선수의 ‘이름’

【예시③】 라디오 광고 등에서 유명인이 연상되는 ‘음성’

【예시④】 사회 통념상 유명인이 인식되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사진’, ‘그림묘사’ 등의 경우



Q.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은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A.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의 성과가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해당 산업의 상거래 관행이라 하여도 그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①】 정보 전달을 위한 것처럼 발행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화보집으로 기능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인 사진을 잡지에 대량으로 수록하는 행위

【예시②】 유명인과의 전속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광고에 유명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

【예시③】 광고계약 체결 시 카탈로그용 사진의 촬영 및 광고에 대해 승낙을 얻었으나, 이후 계약 범위를 벗어나 상이한 별개의 광고에 사진을 이용하는 행위

Q.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은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에 해당하는지?

A.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당사자 허락을 받지 않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무임승차’ 행위
 【예시①】 유명인에게 알리지 않고 광고나 상품에 사용한 경우
 【예시②】 당사자 허락을 받지 않고 유명인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책자나 DVD 등을 제작하는 경우
 【예시③】 유명인 허락 없이 발간한 평전에 별책 부록으로 브로마이드를 제작하여 발매·배포한 경우

Q.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A. 타인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성과 등과 관련된 영업상의 이익은 물론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영업 가치,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와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
 【예시①】 유명 프로선수들의 성명을 허락없이 사용하여 게임물을 제작 및 관여하는 경우
 【예시②】 유명 스포츠 선수의 성명을 허락없이 사용하여 스포츠 용품을 제작한 경우

Q. 해외에서 초상·성명 등에 대해 보호하는 사례가 있는지?

A. 미국은 25개 주에서 주법(성문법)으로 초상·성명 등을 보호 중이며, 그 외 다수의 주에서도 커먼로(Common Law)로서 보호하고 있음. 특히, 캘리포니아주 민법은 타인의 성명, 음성, 서명, 사진 또는 초상을 당사자 등의 사전 동의 없이 고의로 상품의 광고 또는 판매 목적 등으로 사용한 자는 당사자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독일, 영국, 일본에서도 판례를 통해 초상·성명 등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

Q. 헌법상 보호되는 인격권(성명권, 초상권)은 무엇이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는 초상, 성명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A. (성명권)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성명이 타인에 의하여 모용되거나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내용으로 함

(초상권) 자기의 초상을 타인이 권한 없이 회화, 조각, 사진 등으로 작성·공포하는 등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얼굴 뿐 아니라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포함

*우리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보장의 궁극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자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헌재 1990. 9. 10. 89헌마 82), 성명과 초상을 인격권의 보호영역으로 보고 있음(헌재 2001. 8. 30. 2000헌바36)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대상과의 구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는 초상, 성명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인적 식별표지에 한정함

	인 격 적 가 치	경 제 적 가 치
일반인	헌법·민법으로 보호	-
유명인	(정신적 피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

Q.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는 인격권(헌법, 민법)에 의한 보호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A.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과 민법(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751조 ‘정신적 피해 손해 배상’)에 근거한 인격권으로서의 보호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만 인정하므로, 유명인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는 유명인과 일반인의 인격의 가치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의 무단사용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됨

Q.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A. 헌법(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다만, 소설, 만화, 영화 등의 창작물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나, 광고, 상품 등에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무단사용하여 유명인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대상이 될 가능성 높음

Q.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제외된 이유는?

A.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산업 발전 등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형사처벌은 제도를 운영하며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국 대부분 주에서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음

Q. 보호대상이 되는 ‘타인’의 범위는?

A. 타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며, 개인 뿐 아니라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아이돌 그룹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일본 2인조 가수그룹 핑크레이디 사건(2012년), 미국 비틀즈 사건(1993년) 등 해외에서는 아이돌 그룹의 명칭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음

Q. 외국인 및 가상인간도 보호가 가능한지?

A.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면 보호 가능성이 있음
다만, 가상인간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유명하더라도 보호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Q.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지?

A.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무단 사용하여 당사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Q.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은 상속 또는 양도가 가능한지?
(연예기획사 등의 청구권 인정 여부)

A. 부정경쟁방지법은 퍼블리시티권을 등록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양도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음. 한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법원이 표지의 소유자 뿐 아니라, 표지의 사용에 대한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음(대법원 1997.2.5. 96마364 결정 등). 다만, 이는 퍼블리시티권이 아닌 다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판례이므로,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이 동일한 입장을 취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음

Q.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에 대해 연예인(당사자) 외에 기획사 등에 의한 행정조사 및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A. 부정경쟁행위의 행정조사는 누구나 신고 가능하므로, 기획사도 신고 가능함.
다만, 소송은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획사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Part VI. >>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 사례



사례 적용 시 주의사항 

사례 1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파목(성과도용행위)에 의한 판결을 사례로 수정한 것이며, 사례 2와 3, 4, 5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판결을 사례로 수정한 것으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타목(성명·초상 등의 무단사용행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임

※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2021.12.7) 전에는 성과도용행위가 동법 제2조제1호카목이었으나, 동법 개정에 따라 파목으로 변경

사례 1

사건 개요

- A사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공연 기획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B사는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임
- B사는 A사의 아이돌 그룹의 성명 및 초상을 활용한 화보집 등을 제작하여 B사 잡지 특별판의 특별 부록으로 판매

법원 판결

- A사는 해당 사건의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을 선발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훈련을 통해 구성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켰고, 전속계약에 따라 그들의 음악, 공연, 방송, 출연 등을 기획하고, 음원,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유통시키는 등 아이돌 그룹의 활동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함
- 이로 인해 A사의 아이돌 그룹과 관련하여 쌓인 명성 및 신용, 고객흡인력 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A사 아이돌 그룹의 표지를 사용하면 A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
-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나 DVD 등을 제작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함
- B사가 발매한 특별 부록은 A사가 발행하는 아이돌 그룹의 화보집과의 관계에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하여 경쟁관계도 인정됨
- B사가 A사 아이돌 그룹의 성명 및 초상을 활용한 특별 부록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A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사례 2

사건 개요

- A사는 게임 제작업체인 B사로부터 'OOOO'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야구게임을 제작·공급받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
- A사와 B사는 'OOOO'게임을 제작·유통하는 과정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성명, 선수시절 소속구단 등의 인적사항을 게임 캐릭터에 사용

법원 판결

- 전직 프로야구 선수는 야구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반 대중이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공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성명이나 초상 또는 선수로서의 경력, 실적, 근황 등 관련 정보가 합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용되는 데 대해서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이 사건 게임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표시한 것은 게임 캐릭터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명칭의 도구로 활용한 것뿐이고, 그 성명이 가지는 공적 요소와는 무관하게 사적인 영리 추구를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게임에서의 성명 사용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



사례 3

사건 개요

- 배우 A는 화장품회사 B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
- B사는 A와의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및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3년여에 걸쳐 A의 사진을 무단으로 제작하고 상업적으로 이용

법원 판결

- B사가 사용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계속하여 무단으로 책자에 A를 모델로 한 광고물 등을 사용한 것은 A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
- 또한, B사가 위와 같은 A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은 대중적 지명도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A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도 침해
- A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사례 4

사건 개요

- B사는 일간신문에 위장약 000을 광고하면서, TV 드라마 XXX의 주인공 A의 승낙을 받지 않고, 드라마 XXX에 등장하는 A 얼굴의 특징적 부분들을 목탄 스케치로 재연한 인물화를 이용

법원 판결

- B사가 이 사건 인물화의 제작에 직접 참여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인물화가 삽입된 위 광고의 광고주로서 이를 그대로 게재하게 될 경우 A의 초상권을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신문에 게재하도록 승인 하였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B사의 광고담당자들이 A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승낙을 구함이 없이 위 광고를 일간신문 등에 그대로 게재한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사례 5

사건 개요

- A사는 미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건물 외부 벽면에 B의 성명으로 된 간판을 부착하고, 학원 내부에도 B의 초상이나 성명이 들어있는 대형사진을 부착함
- A사는 미용학원을 선전하는 카탈로그의 표지에도 B의 성명을 이용하고, 그 내용에 B의 성명과 사진, 경력 등을 기재

법원 판결

- 유명인의 성명과 초상이 가지는 고객흡인력에 대한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유명인에게 귀속되며, 이러한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는 재산적 권리를 형성
- 이는 일종의 재산권으로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제3자는 그 권리에 근거하여 침해행위에 대해 금지 및 침해의 방지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침해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음
- B의 성명이나 초상의 이용행위에 대한 재산권 권리에 근거하여 금지청구권 및 A사의 물품에 대해서도 폐기청구권 인정



Part V. >>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1 부정경쟁행위 신고방법

신고 및 상담

–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인터넷] www.ippolice.go.kr

[전화] 1666-6464

–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팩스] 042-472-1708

[이메일] ucid@korea.kr

[주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실

[팩스] 02-2183-5899

[이메일] 1666-6464@koipa.re.kr

신고방법

– 신고서 작성 :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 부정경쟁행위 신고 → 신고서 양식

– 신고서 및 증거자료 제출 : 이메일, 팩스, 등기로 제출



신고서 양식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거지)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피신고인	업소명	대표자 성명
	사업소 소재지 또는 주소(거주지)	
	연락처 또는 사업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부정경쟁행위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조항	
	성명, 상호, 상표 등	
	상품	
	법 위반 사항(사실관계)	
	기타 필요사항	
피신고인과의 관계		
기타 증빙서류 목록		

신고인은 위의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2 행정조사

행정조사의 개요 및 목적

- 「부정경쟁방지법(제7조제1항)」에 따라,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를 한 자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이에 특허청 등은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라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행정조사의 방법

행정조사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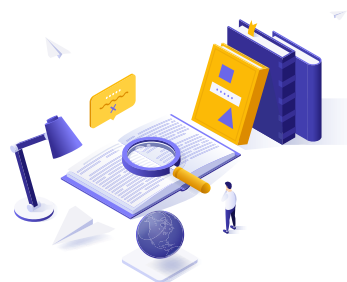


-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의 조사는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음(부정경쟁방지법 제7조제1항)
-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기 전,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의 제출 요청

②출석 요청, 자문 및 진술 청취

- 조사·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사·검사의 목적, 일시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에게 보여야 함
-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수거하거나 제출받은 제품의 현황·목록 등에 관한 사항은 기록 및 보관 필요
- 확인이 종료된 경우, 수거하거나 제출받은 제품을 수거 또는 제출 당시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함



2) 행정조사

행정조사의 중지

-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조사를 중지하려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 및 제5항)
- 조사·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검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함
 - 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②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③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행정조사

행정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거부하거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부정경쟁방지법 제20조제1항제1호)



③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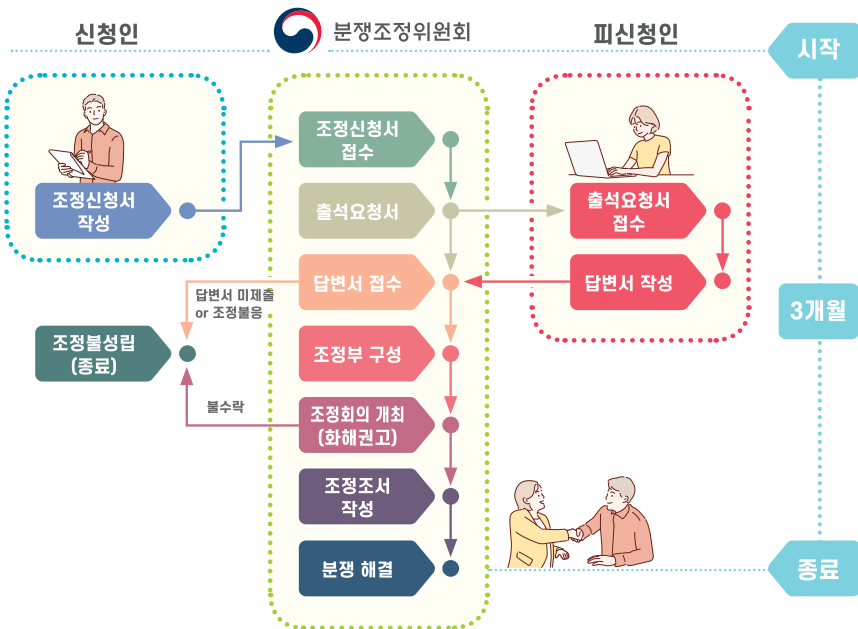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개요

【의의】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에서 심판·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를 문제해결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 간의 합의를 유도해내는 제도

【장점】 ① 소송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고, ②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③ 절차가 간편하고, ④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비밀이 보장되며, ⑤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양측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음

【효력】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 작성 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가능

분쟁조정 절차 흐름도



2 행정조사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자격】 부정경쟁행위 분쟁당사자,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영업비밀을 보유한자, 권리실시에 이해관계가 있는자

【신청대상】 ①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

②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분쟁*

③직무발명 관련 분쟁

④영업비밀 관련 분쟁

* 산업재산권 등록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확인심판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제외

2 행정조사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 제출

【홈페이지】 www.koipa.re.kr/adr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전 화】 1670-9779

【팩 스】 02) 553-5865

【이 메 일】 ip.adr@korea.kr

